KOSHA GUIDE

C - 38 - 2011

슬립폼(Slip form)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4장 제1절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따라 슬립폼 작업과정에서의 안전 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기계식 인양(Jacking)에 의하여 수직으로 이동하는 슬립폼을 이용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슬립폼(Slip form)"이라 함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자립할 수 있는 강도 이상이 되면 거푸집을 상부 방향으로 상승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철근 조립, 콘크리트 타설 등을 실시하여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에 적용하는 거푸집을 말한다.
- (나) "요크(Yoke)"라 함은 슬립폼에 있어서 콘크리트 측압, 거푸집 하중, 작업 하중 등을 유압 잭(Jack)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.
- (다) "상부작업대(Top deck)"라 함은 <그림 1>에서와 같이 수직철근 작업 및 콘크리트 공급 등을 위해 슬립폼의 상부에 설치하는 작업대를 말한다.
- (라) "중간 작업대(Working deck)"라 함은 <그림 1>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확인,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슬립폼의 중간 부분에 설치